

[공모펀드 변경안내]

- 가. 펀드명 :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나. 변경시행일 : 2020년 12월 29일(화)
- 다. 변경대상서류 : 투자설명서,간이투자설명서,집합투자규약
- 라. 주요 변경 내용 :
- 1)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 - 2) 투자위험등급 변경(5등급 → 4등급)
 - 3) Class S-R 수익증권 신설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[표지] ■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코드(종류형 포함)	<신 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 (S-R)[DE557]
요약정보		
투자비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신 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 (S-R)[DE557]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신 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 (S-R)[DE557]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 설>	1)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) 투자위험등급 변경(5등급 → 4등급) 3) Class S-R 수익증권 신설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"가. 책임운용 전문인력"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, "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"	투자위험등급: 5등급(낮은위험) 수익률 변동성 : 3.4485%	투자위험등급 : 4등급(보통위험) 수익률 변동성 : 5.5841%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, "가.매입", "(2)종류별 가입자격"	<신 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

		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“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”, “(1)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”	<신 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 (S-R) -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 -후취판매수수료 : 없음 -환매수수료 : 없음 -전환수수료 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“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”, “(1)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”	<신 설> [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예시)] <신 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 (S-R) -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4000 -판매회사보수 : 연 0.1200 -신탁업자보수 : 연 0.0300 -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200 -총보수 : 연 0.5700 [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예시)]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 (S-R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 “가. 이익 배분”, “(2)상환금 등의 지급”	-(생략)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	-(현행과 같음)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판매 현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실적 및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재무내용 및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, “가. 수익자총회등”, “(5)투자신탁의 합병”	①~④ (생략) ⑤ 집합투자업자는 ‘④’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	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집합투자업자는 ‘④’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, “가. 정기보고서”, “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”	-신탁업자는~(생략)~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	신탁업자는~(현행과 같음)~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

	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(이하 생략)	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(이하 현행과 같음)
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투자비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

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① (생략) ③ 1~12.(생략) <신 설>	① (현행과 같음) ③1~12.(현행과 같음) 13. Class S-R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1~12 (생략) <신 설> ②~⑤(생략)	①1~12 (현행과 같음) 13. Class S-R 수익증권 ②~⑤(현행과 같음)
제25조(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	①(생략) 1~12(생략) <신 설> ②~③(생략)	①(현행과 같음) 1~12(현행과 같음) 13. Class S-R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②~③(현행과 같음)
제28조(환매연기)	①~⑦(생략) ⑧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예탁결제원 에 위탁할 수 있다	①~⑦(현행과 같음) ⑧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
제39조(보수)	①,②(생략) ③1~12 (생략) <신 설>	①,②(현행과 같음) ③1~12 (현행과 같음) 13. Class S-R 수익증권

		<p>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:</u> <u>연 1000분의 4.00</u></p> <p>나. <u>판매회사보수율:</u> <u>연 1000분의 1.20</u></p> <p>다. <u>신탁업자보수율:</u> <u>연 1000분의 0.30</u></p> <p>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</u> <u>연 1000분의 0.20</u></p>
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	<p>①~③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<u>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2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 <p>⑤<u>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u></p> <p>1. <u>대상금액: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료 등)</u></p> <p>2. <u>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 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⑥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제37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3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p>	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"~(이하 생략)</p>	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"~(이하 현행과 같음)</p>